



제422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남방송 소음 등 피해 지원 등〉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60호)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00호)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51호)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8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대남방송 소음 등 피해 지원	5
2. 자동소음망 설치 등	10
3. 발전종합계획 등에 대남방송 대책 마련 사항 포함	12

I. 제안경위

【박정의원안】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5.
3. 회부연월일 : 2024. 12. 6.

【홍기원의원안】

1.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9.
3. 회부연월일 : 2024. 12. 10.

【박상혁의원안】

1.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8.
3. 회부연월일 : 2024. 12. 19.

【김건의원안】

1. 발 의 자 : 김건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4.
3. 회부연월일 : 2024.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정의원안】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홍기원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박상혁의원안】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불면증, 환청 등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황임. 주민 개개인이 비용을 들여 거주지 임시 이전, 방음창 설치 등을 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김건의의원안】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민자유치,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목적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남방송 소음 등 피해 지원

개정안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 접경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박정·박상혁·김건의 원안 제27조의2 신설).

현 행	박정의원안	박상혁의원안	김건의원안
<신 설>	제27조의2(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2(대남방송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대남방송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향해 방송 등을 통하여 발생시키는 소음(이하 “대남방송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남방송소음피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남방송소음부터 적용한다.
--	--	--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북한과 인접하여 있는 접경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접경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특히 2024년 북한이 대남 확성기 가동을 재개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가축의 폐사 등 소음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1) 2)} 이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파

1) - 이현준 기자, “밤낮 없이 ‘끼익끼익’ 쇳소리... 기괴한 대남방송의 정체”, 조선일보, 2024.9.13., 2025.02.12. 최종확인.
 - 권혁철 기자, “‘귀신 소리’ 북 확성기에 주민 고통...합참 “대북 방송 계속”“, 한겨레, 2024.09.13., 2025.02.12. 최종확인.
 - 김서호 기자, ““귀신 울음소리로 귀 찢어질듯” 대남방송 피해 지역 가보니... 밤새 공사장 수준 소음(영상)“, 서울신문, 2024.10.27., 2025.02.12. 최종확인.

2) 참고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의 대남방송 소음은 80dB 수준으로,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림지역 등에서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상회하는 것임. (낮 60dB, 저녁 55dB, 밤 50dB)

주시·김포시, 강원도 철원군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음창 설치 지원이나 심리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내용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대남방송 피해와 무관한 기존 사업을 활용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음.

< 현행법상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

구분	조항	내용
접경특화 발전지구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 행정안전부장관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고시
사업 시행자 지원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보조·융자·알선 등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등 감면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조치
기업 등 지원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회사 설립, 공장 신축·증축, 회사·공장 이전 시 세제상 지원 - 국가 : 투자기업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시설 등 지원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보수 우선 지원 - 국가 : 지방도로 건설 비용 지원 - 국가 : 선박 건조 등 비용 지원
	제22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원 - 통일부장관 : 접경지역 견학·방문 사업 추진, 비용 지원
	제24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유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 지방하천 보수·유지 경비 지원
주민 등 지원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 수산발전기금 지원 - 국가 :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노력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 사업시행자 :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이주대책 수립·시행 - 사업시행자 및 입주 기업 : 공산품,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노력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도시기금 지원

다만, 개정안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은 「민방위기본법」을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24년 12월 일부개정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 등에 의하여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음.³⁾ 해당 법률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령 및 관련 지침에는 대남방송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둘 예정임.

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안보상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기반하여 관광지 조성, 도로 확충,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접경지역발전지원’ 및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이 시행중에 있음.

둘째, 개정안은 ‘대남방송’에 의한 ‘소음피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

3) 「민방위기본법」(법률 제20545호, 2025.6.4. 시행예정)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 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며, 오히려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법률은 다양한 규율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에는 대남방 송으로 인한 소음 등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GPS 교란으로 인한 조업 활동의 어려움,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재물 파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고, 소음 피해 지원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경우에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나,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는 입장임.

2.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현 행	김건의원안
<신 설>	제27조의2(대남방송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소음 실태 파악 및 대남방송소음피해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남방송소음피해 지원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 결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남방송소음피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남방송소음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김건의원안 제27조의2 제2항·3항·4항 신설).

이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통해 대남방송 소음피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특히 대남방송 소음피해에 대한 기존의 지원 정책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내용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대남방송

피해와 무관한 기존 사업을 활용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의 산정이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및 관련 법령 등을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24년 12월 일부개정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 등에 의하여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음.⁴⁾ 해당 법률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령 및 관련 지침에는 대남방송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둘 예정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대남방송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결정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므로, 자동소음망 측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민방위기본법」(법률 제20545호, 2025.6.4. 시행예정)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발전종합계획 등에 대남방송 대책 마련 사항 포함

개정안은 북한의 대남방송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위협·도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접경지역발전협회의 협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홍기원의원안 제5조 및 제10조).

현 행	개정안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생략)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0. (생략) <u><신설></u> 21. (생략) ③ ~ ⑪ (생략)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0. (현행과 같음) 21. <u>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u>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회를 둔다. 1.·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생략)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u>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2011년에 ‘제1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담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이 수립되었고, 2019년에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와 사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해당 계획은 관광, 군사, 주거, 산업, 교통 등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괄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관

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산지의 계획적·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2.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4.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데,⁶⁾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내용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와 유사하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발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접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
1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8.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19.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이하 생략)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항만·공항·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개발·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주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만으로는 북한의 위협·도발에 의한 주민 피해를 지원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⁷⁾를 거쳐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발전종합계획은 20년(2011~2030)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담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주민이 경험하는 피해의 정도·유형·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도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며, 대책 마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지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소음피해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대남방송 등에 따른 주민안전 대책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⁸⁾에 해당하여 접경지역 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될 수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는 입장임.

7) 제29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회의록(2010.11.30.),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2010.12.3.),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심사보고서(2010.12.)

문 의 처
02)6788-5350